

# 부산공유대학 학사 운영 지침

제정 2023. 12. 21.

개정 2024. 3. 26.

개정 2024. 6. 4.

개정 2025. 2. 17.

개정 2025. 2. 28.

개정 2025. 7. 17.

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“부산공유대학”의 학사운영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**부산공유대학**” (이하 “공유대학”이라 한다.)이란 BITS 공유대학이 확대 발전된 체제로 부산지역 참여대학과 지자체가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편성·운영하여 지역 전략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부산형 공유대학 교육시스템을 말하며, 영문 명칭은 Busan Shared University(BSU)이다.
2. “**융합전공**”이란 2개 이상 대학의 학부·학과·전공이 협력하여 새롭게 설치·운영하는 전공을 말한다.
3. “**전공모듈(트랙)**”이란 융합전공별 설치·운영하는 세부분야를 말한다.
4. “**주관대학**”이란 중심대학과 참여대학을 대표하며 부산공유대학본부가 소속된 대학으로 부산대학교를 말한다.
5. “**중심대학**”이란 융합전공을 주관하여 운영하는 대학으로서 국립부경대학교, 국립한국해양대학교, 부산대학교, 동아대학교를 말한다.
6. “**참여대학**”이란 융합전공의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참여하거나 개별 소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.
7. “**전공주임교수**”란 공유대학에서 운영하는 융합전공의 교무를 통할하는 전임교원을 말한다.

**제3조(교육목표)** 공유대학은 지역 산업의 활성화를 선도할 “부산 특화산업 혁신을 선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창의 융합 인재” 양성을 교육목표로 한다.

**제4조(운영방향)** 공유대학은 부산 지역 소재 대학들이 협력하여 구성한 대학으로 “교

육 체계의 다양화” 및 “교육 방법의 혁신과 공유” 를 주요 운영 방향으로 설정한다.

**제5조(적용범위)** 이 지침은 공유대학에 참여하는 대학, 교원(산업체 강사 등 포함), 학생에 대하여 적용한다.

## 제2장 학사 조직 및 위원회

**제6조(대학본부)** ① 공유대학의 대학본부는 부산공유대학본부(이하 “본부”라 한다)가 그 역할을 수행한다.

- ② 본부에는 본부장과 부분부장을 두며, 본부장은 주관대학의 교원 중에서 주관대학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부분부장은 본부장의 추천으로 주관대학의 교원 중에서 주관대학 총장이 임명한다.
- ④ 본부에는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실장을 두며, 업무 분장에 따른 팀제로 운영하고 각 팀에는 팀장과 비전임교원, 사무원 등을 둘 수 있다.

**제7조(융합전공)** ① 공유대학의 학사 조직으로 4개의 융합전공(미래모빌리티전공, 해양미래산업전공, 클린에너지전공, 인공지능·소프트웨어전공)을 두며, 추후 산업 수요가 발생할 경우 전공을 추가할 수 있다.

② 융합전공은 참여대학의 담당 부서 또는 학과에서 추가 신설할 수 있으며, 융합전공의 신설 및 폐지 등 공유대학 운영의 중요사항은 본부의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다.

**제8조(학장·전공주임)** ① 공유대학의 학(원)장은 공유대학 본부장이 겸한다.

- ② 융합전공에는 전공주임교수를 두며, 전공주임교수는 중심대학의 교원중에서 중심대학 총장이 임명한다.
- ③ 전공주임교수는 융합전공별 대표 전공모듈(트랙) 책임교수가 겸하며, 융합전공 참여교수와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해당 학위 전공 학생의 수학에 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**제9조(위원회)** ① 공유대학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, 교육혁신 방안 및 전략수립, 교육성과에 대한 평가 및 질 관리를 위하여 본부에 교육위원회, 운영위원회, 대학협력위원회를 둔다.

- 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## 제3장 학사 운영

**제10조(지원자격)** 공유대학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참여대학의 재학생으로 하나의 융합

전공에만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.

1. 원소속 대학에서 학사 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학생
2. 4학기 이상 이수 또는 이수 예정인 자
3. 원소속 대학의 학사관리 규정에 의해 융합전공 신청이 가능한 자

**제11조(학생정원)** 공유대학의 융합전공별 학생정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2조(학생선발 및 등록)** ① 공유대학 학생선발 기준은 융합전공별 전공주임교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본부 운영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.

- ② 학생선발을 위한 서류전형은 본부에서 실시하고, 면접전형은 각 융합전공에서 실시하며, 최종 학생선발 결과는 본부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- ③ 본부는 학생선발 결과를 지원 학생 및 학생의 원소속 대학에 통보하고, 기타 학생선발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유대학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.
- ④ 최종합격자는 원소속 대학의 등록금납부 및 공유대학의 융합전공 등록과정을 완료해야 공유대학 재학생의 신분과 지위를 인정한다.

**제13조(장학금)** 공유대학에 선발되어 복수전공 및 부전공,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을 이수하는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
**제14조(학사일정)** 학사 운영은 정규학기(1학기, 2학기), 계절수업(하계, 동계)으로 한다. 학사일정은 참여대학의 학사일정을 고려하여 본부에서 정한다.

**제15조(학위수여)** ① 공유대학 교육과정 이수 기준 및 원소속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에게 다음과 같이 학위를 수여한다.

1. 복수전공 및 부전공 최소학점 이상 이수 시 원소속 대학에서는 복수전공 및 부전공 학위증을 수여한다.
2. 마이크로 디그리 최소학점 이상 이수 시 원소속 대학에서는 졸업증서에 마이크로 디그리 표기 또는 이수증을 발급한다.

② 학위수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생의 원소속 대학의 관련 규정에 의한다.

**제15조의 2(이수증수여)** ① 공유대학은 교육과정 이수 기준을 충족한 학생에게 이수증을 수여한다.

② 공유대학 이수증에는 학생이 이수한 교육과정명과 원소속 대학이 표기되며 공유대학의 학장 명의로 발급한다.

**제16조(학적관리)** ① 공유대학 융합전공에서는 소속 학생에 대하여 학생의 원소속 대학과 긴밀한 협조하에 학적관리를 수행한다.

② 공유대학 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원소속 대학의 등록 절차에 따라 매 학기

등록을 하여야 한다.

- ③ 공유대학 융합전공 이수 기간은 소속대학 재학 기간으로 간주한다.
- ④ 공유대학 융합전공에 선발된 학생은 융합전공 간 소속을 변경할 수 없다. 교육과정 변경은 이수 기간 내에 2회 허용하되, 원소속 대학에서 1회만 허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.
- ⑤ 공유대학 융합전공에서는 공유대학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통해 수업일수 5분의 1 이상 결석한 학생을 파악하여 전공주임교수 또는 모듈(트랙) 책임교수에게 통보하고, 교수는 학생과 면담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전공주임교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17조(휴학·복학·퇴학 및 제적)** ① 학생의 휴학·복학·퇴학 및 제적 등 원소속 대학에서 학적이 변경된 경우, 공유대학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.

- ② 기존 BITS 공유대학 학생은 공유대학으로 자동 이관된다.

## 제4장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

**제18조(교육과정 편성 및 개편)** ① 공유대학 교육과정은 지역전략산업의 인재상과 미래 직무역량을 반영하여 융합전공에서 제안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공유대학 교육과정 편성 시 융합전공은 참여대학별 학사 관련 규정 및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편성하여야 한다.
- ③ 공유대학 교육과정 개편은 연2회에 한하며 본부는 3월과 9월에 개편일정을 공지한다.
- ④ 공유대학 교육과정은 본부 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확정한다.
- ⑤ 공유대학 교육과정의 학점 편성은 1~3학점으로 한다.

**제19조(시간표 편성)** 융합전공별 참여대학의 학사일정과 참여학생의 원소속학과의 수업시간 등을 고려하여 학생의 수강 여건이 보장되도록 시간표를 편성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교과목 개설)** ① 교과목은 각 참여대학에서 개설할 수 있으며 참여대학의 사정으로 교과목 개설이 어려울 경우 타 대학의 교과목을 학점교류로 이수할 수 있다.

- ② 본부는 공유대학 학사관리시스템에 교과목을 개설하고 개설된 교과목 및 시간표를 종합하여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교과목 담당교수는 수업계획서를 공유대학 학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.
- ④ 참여대학은 편성된 교과목의 시간표와 동일한 시간에 교과목을 개설하여야 한다.
- ⑤ 공유대학 수강신청 결과 교과목별 분반 인원을 총합하여 수강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폐강한다. 다만, 융합전공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.

**제21조(수업운영)** ① 융합전공 모듈(트랙)별 개설 교과목에 대한 수업방법은 참여대학의 여건을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, 오프라인 수업, 온·오프라인 혼합 수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수업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**제22조(수강신청)** ① 융합전공 참여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유대학 학사관리시스템에서 개설 교과목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.

② 참여학생이 수강을 철회할 때에는 수업일수 1/4선 내에 본부에서 공지한 기간 내에 본부로 신청한다.

③ 본부는 수강신청 현황을 종합하여 참여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④ 참여학생은 원소속 대학에서 규정한 학점 제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, 매 학기 12학점, 계절수업 6학점을 초과하여 수강 신청할 수 없다.

⑤ 공유대학에서 운영하는 전공 및 교양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는다.

**제23조(학점인정)** ① 공유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생의 원소속 대학의 학점으로 인정한다.

② 학생의 원소속 대학에서 공유대학 융합전공 선발 이전에 이수한 교과목 중 융합전공 편성 교과목과 동일한 과목이 있을 때에는 최대 12학점까지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다만, 학생의 원소속 대학에 융합전공의 교과목 이수에 대한 중복 인정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.

③ 학생이 소속한 융합전공 외에 공유대학 내 타 융합전공의 전공 교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, 6학점 이내에서 소속한 융합전공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④ 공유대학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을 재이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C+ 이하만 재이수 신청 가능하며, 이미 취득한 성적은 삭제하고 평점 평균을 다시 산출한다.

⑤ 재수강을 통해 취득한 성적 인정에 대해서는 학생 원소속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⑥ 공유대학 융합전공 이수를 취소할 경우, 해당 전공에서 취득한 학점은 참여대학의 일반 선택 및 자유 선택 등으로 인정한다. 단, 원소속 대학의 주전공과 관련이 있는 교과목은 원소속 대학의 주전공 학과장이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⑦ 초과 이수한 학점인정의 경우, 원소속 대학의 학점인정 규정에 따른다.

**제24조(이수학점)** 공유대학 교육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 이수 구분에 따라 다음의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하여야 한다.

교육과정	복수전공	부전공	마이크로 디그리
이수학점	36학점	21학점	12학점

## 제5장 출석인정

**제25조(출석)** 교과목 담당 교수는 매 시간 출결사항을 공유대학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입력하여야 한다.

**제26조(인정기준)** 출석인정 기준은 원소속 대학의 학사 운영 규정에 따른다. 단, 조기 취업의 경우에는 본부에 취업증명원을 제출해야 한다.

**제27조(절차)** ① 출석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원소속 대학의 절차에 따라 출석인정 허가를 받은 후 공유대학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통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신청한다.

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공유대학 학습관리시스템(LMS)을 통하여 학생이 제출한 출석 인정신청서를 확인 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.

③ 출석인정은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하지 못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14일 이내에 신청한다.

④ 교과목 담당 교수는 필요할 경우 결석기간 동안 해당 학생에게 과제물 등을 부여할 수 있다.

⑤ 「예비군법」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교과목 담당 교수는 훈련 기간 동안 출결, 성적처리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으며, 예비군 훈련으로 인한 수업 결손 발생 시 수업시간에 제공한 학습자료를 포함하여 수업 보충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## 제6장 성적평가 및 등급부여

**제28조(시험)** ① 시험은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으로 나누되, 정기시험은 매 학기 중간과 기말에 실시하고, 수시시험은 필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교과목 시험방법은 대면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지필 및 실기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. 다만, 융합전공 및 대학별 여건에 따라 온라인 시험, 참여대학별 대면 시험, 과제 대체 등의 방법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, 온라인시험 및 참여대학별 대면 시험 시 공정한 시험을 위하여 시험시간의 제한, 참여대학별 조교 등을 활용한 시험감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③ 학생이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추가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다.

1. 추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학생은 추가 시험응시원에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를 붙여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를 거친 후 전공주임교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가. 질병으로 인한 경우(다만, 「의료법」 제17조 제1항에 따라 본인에게 교부된 진

단서, 증명서 또는 처방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)

나. 군 입영 또는 병역 소집에 응하는 경우(「병역법」 제6조 제1항에 따른 병역의 무부과 통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)

다. 본인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에 해당하는 친족이 사망한 경우(사망진단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.)

라.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공주임교수가 인정하는 경우(해당 증빙서류 제출)

2. 추가시험 응시원 제출 시한은 해당 시험 개시 일주일 전부터 해당 시험 종료 후 3일까지로 한다.

3. 추가시험은 정기시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실시하되, 성적평가는 A 이하로 한다.

4. 입대와 병무소집에 응할 경우 등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리 시험을 치르게 할 수 있으며, 성적평가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

**제29조(평가지 관리)** 교과목별 수강인원에 대한 평가지의 관리는 교과목 담당 교수가 관리하여야 한다.

**제30조(강의평가)** 융합전공 개설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는 공유대학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서 학생이 성적평가 결과를 확인하기 전에 실시한다.

**제31조(성적평가)** ① 융합전공 교과목의 성적평가는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융합전공 개설 대학의 학사규정 및 교과목 성격에 따라 상대평가, 준상대평가, Pass/Fail 등을 적용할 수 있다.

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교과목별 수강생에 대한 성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유대학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 입력하여야 한다.

**제32조(성적열람·정정·확정)** ① 학생은 정해진 기간 내에 공유대학 학습관리시스템(LMS)에서 성적을 열람할 수 있으며, 성적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기간 내에 교과목 담당 교수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.

② 교과목 담당 교수는 정당한 이의 신청에 대하여 열람기간 및 정정기간 내에 성적을 정정 입력하여야 한다.

③ 성적정정은 공유대학의 기준과 절차를 따른다.

④ 성적은 열람 및 정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확정한다.

⑤ 제4항에 의하여 확정된 성적은 정정할 수 없다. 다만, 교과목 담당 교수의 오기 또는 누락이 있을 때에는 원소속 대학의 규정에 따라 성적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.

**제33조(대학별 성적등급 부여)** ① 공유대학은 제32조에 따라 수강생별 부여된 교과목 성적 등급과 원점수를 학생의 원소속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학생의 원소속 대학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성적 등급과 원점수를 대학별 성적 등급 기준에 따라 확정 및 부여하여야 한다.

- ③ 공유대학 교과목 성적 인정 및 원소속 대학의 성적장학금 포함 여부는 원소속 대학의 규정에 따른다.

## 제7장 강사료 및 예산 확보

**제34조(강사료의 지급)** ① 주관대학은 공유대학의 교양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② 중심대학은 공유대학의 융합전공 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수에게 강사료를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③ 강사료 지급에 관한 세부 기준은 [별표1]에 따른다.

**제35조 (예산의 확보)** 공유대학 사업에 참여하는 주관대학과 중심대학은 공유대학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.

## 제8장 기타사항

**제36조(기타사항)**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「고등교육법」과 동법 시행령, 「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 법령 및 기준을 따르며,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.

### 부칙 (2023.12.21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2024.3.26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# 부칙 (2024.6.4.)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칙 (2025.2.17.)**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칙 (2025.2.28.)**

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**부칙 (2025.7.17.)**

**제1조(시행일)**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**제2조(전공 명칭 신설 및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)** ① 종전 학칙에 따른 스마트항만물류 전공 및 스마트국제물류전공은 2026년 2월까지 존속하며, 존속기간 이후 재적생은 해양미래산업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
② 종전 학칙에 따른 스마트해양모빌리티전공은 2026년 2월까지 존속하며, 존속기간 이후 재적생은 미래모빌리티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
③ 종전 학칙에 따른 클린에너지전공은 전공 명칭 변경 없이 계속 존속한다.

**제3조(전문대학교 대상 교육과정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)** 종전 학칙에 따라 전문대학교 대상 교육과정에 입학하여 재적 중인 학생은 이수 시까지 부칙 제2조에 따른 전공 재적생으로 본다.

[별표 1]

### 강사로 지급 기준표

수업 방법	시간당 강의료	비고
대면수업, 실시간 쌍방향 화상수업	150,000원 이내	혼합수업(블렌디드러닝) 및 온라인 수업의 경우 차시별 운영방식(대면수업, 온라 인수업, 대면시험 등)에 따라 강의료를 구분하여 지급할 수 있음
원격수업 (동영상 등의 강의 콘텐츠 활용)	70,000원 이내	